

4.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□ 개정 이유

-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제5902호로 개정('99. 2. 8)되고 대통령령 제16187호('99. 3. 17)로 각각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의 신고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규정과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제공할 때 신고의무규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고,
-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바대로 가산금 조항을 신설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규정을 신설(안 제3호)
- 민간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설치신고 의무규정,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제공할 때에 신고의무규정을 삭제(안 제13조 및 제25조)
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(안 별표2)

□ 검토의견

- 금번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(법 제19조의 3, 영 제25조)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 위법령에 저촉되는 바는 없다고 사료되어
 - 민간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
 - 민간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설치신고의무 규정을 삭제.
 - 부설주차장을 일반에 제공할 때에 신고의무 규정의 삭제.
 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한 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주차요금을 거절하는 자등 위반자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주차장법 제9 조제3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4배로 최고치를 규정한 것은 주민부담의 과다로 가산금 부과에 대한 저항이 우려됨.

서 면 답 변 자 료

질문의원	이 하 용 의원	답변부서	건 설 국
질문제목	350번지방도(오현-웅담) 화 · 포장공사 도로변경 절차 등		

□ 질문요지

○ 350번 지방도(오현-웅담) 화 · 포장공사의 도로변경 절차는

○ 법원읍 종합복지회관의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현황은

□ 답변자료

○ 350번지방도 화 · 포장공사 도로변경 절차

- '91. 11. : 사업실시설계 완료
- '92. 9. 24 : 도로구역결정고시(경기도)

비관리청 시행허가(경기도 사업을 파주시에서 위탁공사 시행)

- '92. 10 : 추진위원회 구성 [위원장 : 읍장, 위원 : 5인(해당리장)]
- '95. 8. 8 : 법원읍복지회관운영위원회 개최(복지회관 용도폐지 심의 의결)

※ 공사기간 : '92. 9. 24 ~ '96. 6. 30.

○ 법원읍종합복지회관 보상 현황

- 건물보상액 : 103,320천원
- 건물면적 : 328m'
- 단 가 : 315천원
- 보상지급일 : '95. 12. 29
- 보상대상 : 파 주 시

답변자 직위 : 건 설 국 장

성명 : 김 기 성

서 면 답 변 자 료

질문의원	우 관 제 의원	답변부서	건 설 국
질문제목	복지회관의 의용소방대 및 노인정의 사용료가 무료인지 등		

□ 질문요지

- 탄현면종합복지회관에 의용소방대와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는지
- 복지회관내에 남자노인정만 있는데 여자노인정도 설치할 수 있는지

□ 답변자료

-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감면규정이 있으며, 탄현면의 의용소방대 및 노인정은 사용료를 면제받아 무료로 사용중에 있습니다.
- 여자노인정 설치에 대하여는 탄현면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방침입니다.

답변자 직위 : 건 설 국 장

성명 : 김 기 성

김기성